

◆

---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기초)**

---

◆

National  
Tax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2026



납세자세법교실  
바로가기

## 머리말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우리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大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절세혜택 도움자료 별도 안내 등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납세자 여러분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 신규 창업자 등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Live'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양방향 소통 채널을 신설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법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세법교실에 사용되는 본 교재를 준비하면서 납세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편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기초)

2026. 4. 24. (金)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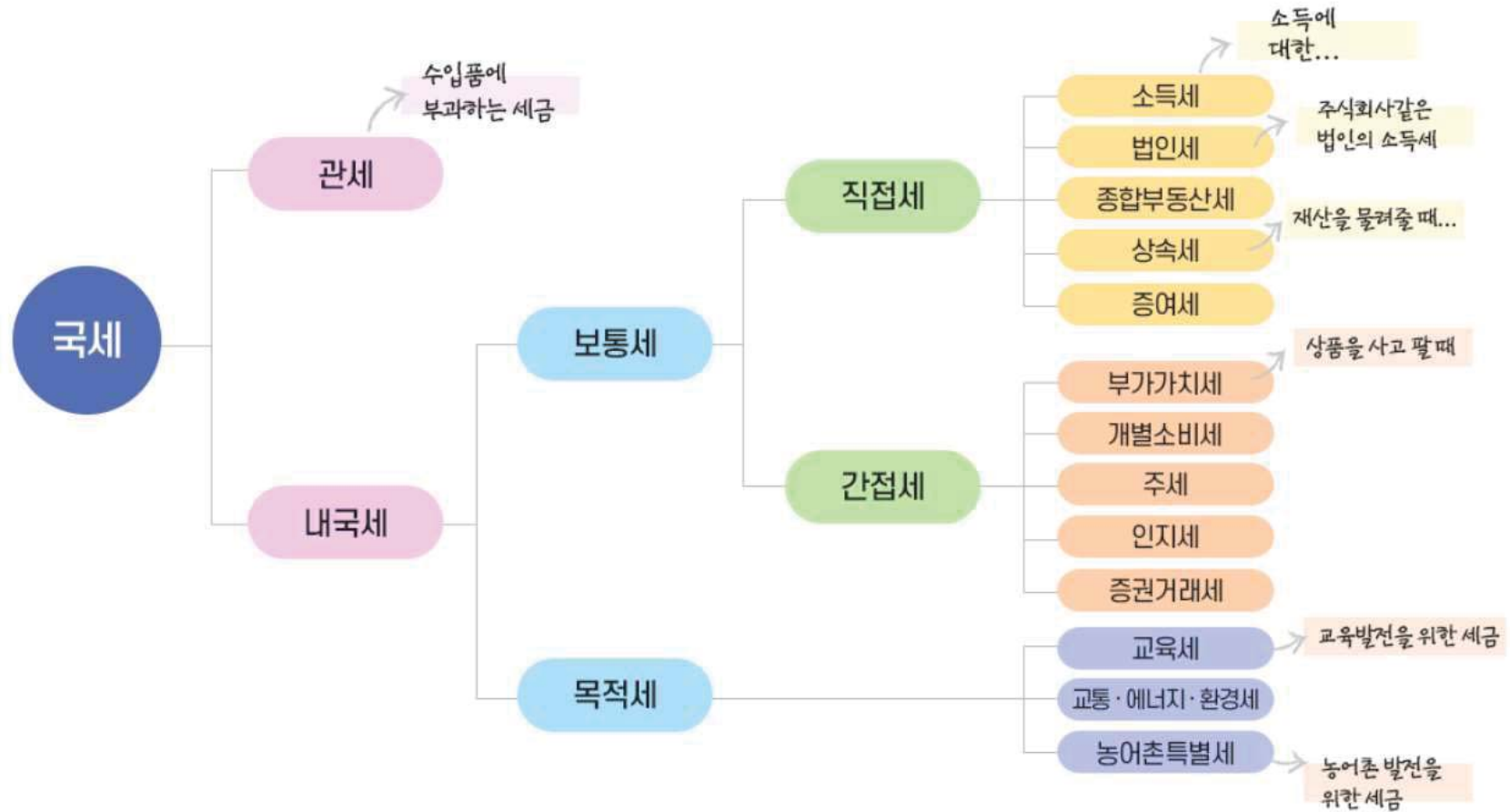
세무사 이호성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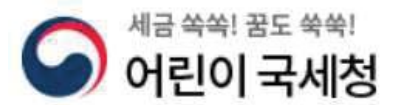
|                 |    |
|-----------------|----|
| 0. 도입           | 1  |
| 1.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  | 6  |
| 2. 신고서 작성요령(기초) | 17 |
| 3. 기장의무와 필요경비   | 31 |
| #. 추가자료         | 43 |

#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자료출처 :



## 직업



**A 임대사업자**



**B 프리랜서**



**C 주식 투자자**



**D 학교 선생님**

**1 종합소득세**



**2 양도/배당소득세**



**3 근로/지방소득세**



**4 재산세, 임대소득세**



## 세금

## 소득세의 역사

소득세는 십자군전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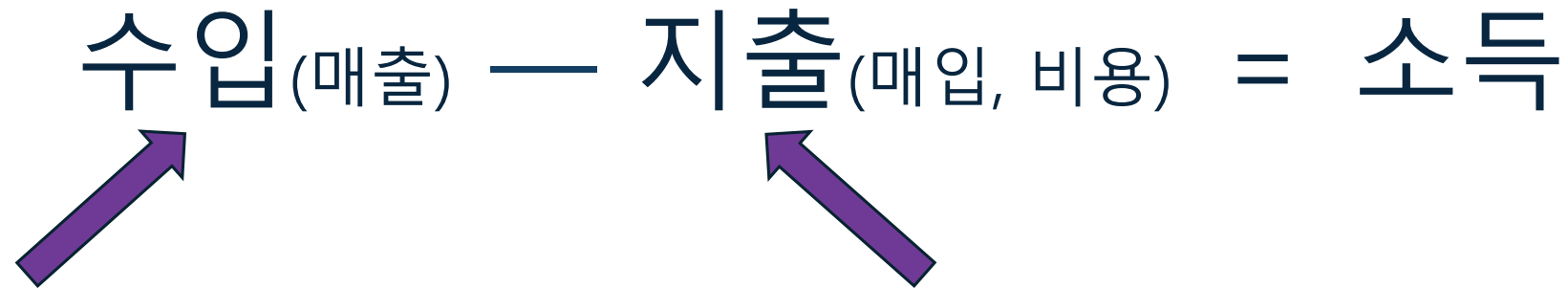
1182년 영국의 헨리2세는 3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 소득의 10%를 십일조로 거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득세 개념은 1799년 영국의 재무장관 윌리엄 피트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1861년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 제정 후 소득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어린이신문.com

## 소득에 대한 세금

$$\text{수입 (매출)} - \text{지출 (매입, 비용)} = \text{소득}$$


## 1.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

---

- 소득의 종류
- 신고안내 유형
- 신고대상 및 예외
-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계산흐름
- 세율
- 거주자와 비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분리과세?

## 혹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으셨나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안내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할 필요

| 구분       | 유형                               | 기장의무  | 경비율   |
|----------|----------------------------------|-------|-------|
| 사업자      | (S)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간편/복식 | 기준    |
|          | (A) 외부조정 대상자                     | 복식    | 기준    |
|          | (B) 자기조정 대상자                     | 복식    | 기준    |
|          | (C)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자)         | 복식    | 기준    |
|          | (D)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    | 기준    |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                    | 간편    | 단순    |
|          | (F), (G) 모두채움                    | 간편    | 단순    |
| 종교인 기타소득 | (V) 모두채움 (분리과세 주택임대)             |       | 해당 없음 |
|          | (Q), (R) 모두채움                    |       | 해당 없음 |
| 비사업자     |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 소득 |       | 해당 없음 |

주의 필요!!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유의!)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예외 존재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지출(매입, 비용)을 언제나 인정해 줄까?

종합소득

비용 인정??

이자소득

비용 불인정

배당소득

비용 불인정 (+귀속법인세)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비용 인정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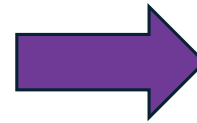
비용 인정

연금소득

비용 인정

기타소득

비용 인정 (예외적 불인정)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종합소득세 계산흐름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 세율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 가산세         |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일부)

## ④ 세액의 계산

| 구        |     | 분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   |
|----------|-----|---------------------|---------|---------|---------|-------|---|---|
| 총        | 합   | 소                   | 득       | 금       | 액       | ①     |   |   |
| 소        | 득   | 공                   | 제       |         |         | ②     |   |   |
| 과        | 세   | 표                   | 준       | (① - ②) |         | ③     |   |   |
| 세        |     |                     | 율       |         |         | ④     |   |   |
| 산        | 출   | 세                   | 액       |         |         | ⑤     |   |   |
| 세        | 액   | 감                   | 면       |         |         | ⑥     |   |   |
| 세        | 액   | 공                   | 제       |         |         | ⑦     |   |   |
| 결정<br>세액 | 총   | 합                   | 과       | 세       | (③-④-⑦) | ⑧     |   |   |
|          | 분   | 리                   | 과       | 세       |         | ⑨     |   |   |
|          | 합   |                     | 계       | (⑧+⑨)   |         | ⑩     |   |   |
| 가        |     | 산                   | 세       |         |         | ⑪     |   |   |
|          |     | 추                   | 가       | 납       | 부       | 세     | 액 |   |
|          |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         |         |         |       | ⑫ |   |
| 합        |     | 계                   | (⑩+⑪+⑫) |         |         | ⑬     |   |   |
| 기        | 납   | 부                   | 세       | 액       |         | ⑭     |   |   |
| 납        | 부(환 | 급)할                 | 총       | 세       | 액       | (⑬-⑭) | ⑮ |   |
| 납부특례세액   |     | 차                   | 감       |         |         | ⑯     |   |   |
|          |     | 가                   | 산       |         |         | ⑰     |   | ⑳ |
| 분        | 납   | 할                   | 세       | 액       | 2개월 내   | ㉑     |   |   |
| 신고기한     | 이내  | 납부(환급)할             | 세액      | (⑮-⑰-㉑) |         | ㉒     |   |   |
| 국        | 세   | 환                   | 급       | 금       | 총       | 당     | ㉓ |   |
| 총        | 당   | 후                   | 납       | 부(환     | 급)할     | 세액    | ㉔ |   |

## 종합소득세 세율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br>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br>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br>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br>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br>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br>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br>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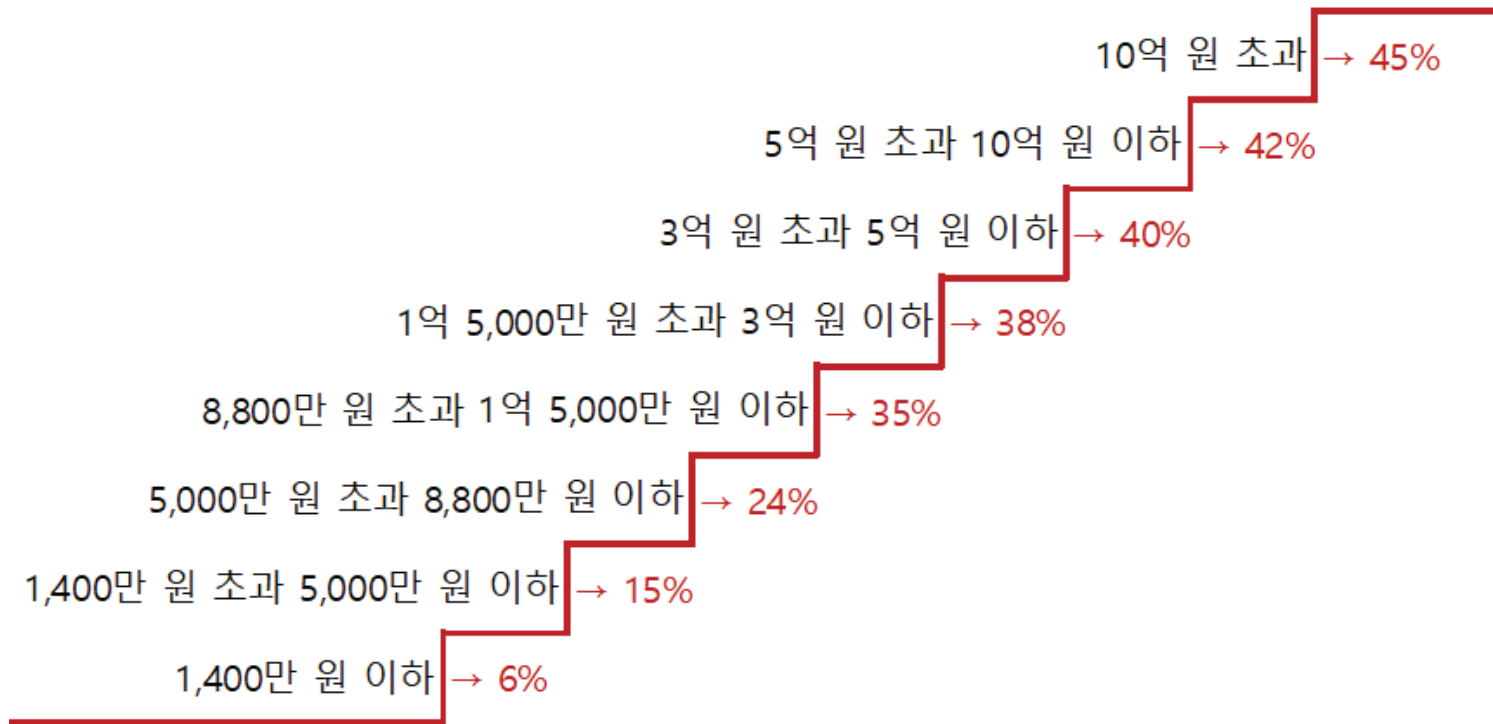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 세율 (속산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종합소득세 세율 : 초과누진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 2. 신고서 작성요령(기초)

---

- 사업소득 관련 용어 A
  - 기장, 추계, 경비율
- 추계신고의 경우 가산세
- 신고서식(간편)
- 간편서식 작성 예시

## 사업소득 관련 용어

◎ 기장(記帳) vs 추계(推計) 그리고 경비율(經費率)

- 뜻

- 원칙과 예외

- 추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다르다!

## 추계신고의 경우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text{산출세액} \times [\text{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 2쪽

### 5 사업소득명세

| 71<br>일련<br>번호 | 사업장              |                           | 74<br>소득<br>구분코드<br>(5쪽 작성<br>방법 참고) | 75<br>업<br>종<br>코드 | 76<br>총수입<br>금액 | 77<br>단순<br>경비율(%) |         | 78<br>필요경비<br>(=76×77) | 79<br>소득<br>금액<br>(=76-78) | 6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
|----------------|------------------|---------------------------|--------------------------------------|--------------------|-----------------|--------------------|---------|------------------------|----------------------------|----------------------------------|--|
|                | 72<br>상호<br>(성명) | 73<br>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 |                                      |                    |                 | 일반<br>율            | 자가<br>율 |                        |                            | 80<br>원천징수또<br>는<br>납세조합<br>징수세액 | 81<br>원천징수의무자<br>또는<br>납세조합<br>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중 제3쪽)

## 3쪽

### 7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 82<br>소득<br>구분코드<br>(6쪽 작성<br>방법 참고) | 83<br>일련<br>번호 | 소득의 지급자<br>(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 86<br>총수입금액<br>(총급여액·<br>총연금액) | 87<br>필요경비<br>(근로소득공제·<br>연금소득공제) | 88<br>소득금액<br>(86-87) | 원천징수세액    |                  |
|--------------------------------------|----------------|-------------------------|---------------------------|--------------------------------|-----------------------------------|-----------------------|-----------|------------------|
|                                      |                | 84<br>상호(성명)            | 85<br>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 |                                |                                   |                       | 89<br>소득세 | 90<br>농어촌<br>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              |                          |  |
|--------------|--------------------------|--|
| 특별소득<br>공제   | ⑨1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
|              | ⑨2 주택자금 공제               |  |
| 그 밖의<br>소득공제 | ⑨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
|              | ⑨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⑨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 ⑨6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              | ⑨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 ⑨8 합         | 계: ⑨1+⑨2+⑨3+⑨4+⑨5+⑨6+⑨7  |  |

##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                              |  |
|------------------------------|--|
| ⑨9 「소득세법」 상 세액감면(제59조의5)     |  |
| ⑨10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18조 외) |  |
| ⑨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   |  |
| ⑨12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  |
| ⑨13 합계: ⑨9+⑨10+⑨11+⑨12       |  |

##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             |        |          |        |
|-------------|--------|----------|--------|
| ⑩1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특별세액<br>공제  | ⑩6 보험료 | 보장성      | 공제대상금액 |
|             |        | 장애인전용보장성 | 세액공제액  |
|             | ⑩7 의료비 |          | 공제대상금액 |
|             |        |          | 세액공제액  |
|             | ⑩8 교육비 |          | 공제대상금액 |
|             |        |          | 세액공제액  |

# 3쪽

|                     |        |  |
|---------------------|--------|--|
| 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  |
| ㉕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㉖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  |
|                     | 세액공제액  |  |
| ㉗ 합 계: ㉔~㉖ 세액공제액 합계 |        |  |

# 1쪽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5. 3. 21.> (6쪽 중 제1쪽)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      |   |       |              |
|------|---|-------|--------------|
| 관리번호 | - | 거주구분  |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 내·외국인 | 내국인1 / 외국인9  |
|      |   | 거주지국  | 거주지코드        |

|            |                      |                           |
|------------|----------------------|---------------------------|
| ① 기본사항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 ⑦ 휴대전화번호                  |
| ⑧ 신고유형     | 32 추계-단순율<br>40 비사업자 | ⑨ 기장의무                    |
|            |                      | 21 간편장부대상<br>자3 비사업자      |
|            |                      | ⑩ 신고구분                    |
|            |                      | 1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후신고 |
| ② 환급금 계좌신고 |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
|--|----|
| 구분   | 금액 |
| ⑬ 종합소득금액: ⑤ 사업소득명세(79)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88)의 소득<br>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
| ⑭ 소득공제: 15~29합계-30   |    |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            |           |        | 인적공제     |  |    |
|-------------|----|------------|-----------|--------|----------|--|----|
| 관계<br>코드    | 성명 | 내외국인<br>코드 | 장애인<br>코드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인원                                     | 금액 |
|             |    |            |           |        | 기본<br>공제 | 15 본인<br>16 배우자<br>17 부양가족<br>18 경로우대자 |    |
|             |    |            |           |        | 추가<br>공제 | 19 장애인<br>20 부녀자<br>21 한부모가족           |    |

# 1쪽

|  |  |                                  |  |  |
|--|--|----------------------------------|--|--|
| 소득<br>공제<br>명세   | 2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용<br>합니다.                            |                                  |  |  |
|  | 2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br>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  |  |
|  | 2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  |  |
|  | 25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br>합니다.                          |                                  |  |  |
|  | 2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br>벤처기업투자                 |  |  |
|  | 2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  | 2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
|  |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8 근로소득자 소득<br>공제명세 합계금액(98)을 적용합니다.                  |                                  |  |  |
|  |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                                  |  |  |
|  | 31 과세표준: ③-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  |
| 32 세율: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                                  |  |  |
| 33 산출세액: 31×32 - 누진공제액(제5쪽 작성방법 참고)  |  |                                  |  |  |
| 3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용합니다.  |  |                                  |  |  |
| 35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9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100)을 적용합니다.   |  |                                  |  |  |
| 36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37~47)의 합계금액을 적용합니다.   |  |                                  |  |  |
| 37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용합니다.  |  |                                  |  |  |
| 38 혼인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용합니다.  |  |                                  |  |  |
| 39 자녀<br>세액<br>공제  |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손자녀<br>※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 명                                |  |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명                                |  |  |
| 40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br>적용합니다.   | 공제<br>대상금액   | 과학기술인공제                          |  |  |
|  |  | 퇴직연금                             |  |  |
|  |  | 연금저축<br>ISA 만기 시<br>연금계좌납입액      |  |  |
| 41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 대<br>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2024<br>년에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원 초과분은 40%]<br>※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br>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  |
|  |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br>대상금액  |                                  |  |  |

# 1쪽

|   |   |                   |
|---|---|-------------------|
| ④② 표준세액공제   |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br>-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9만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                   |
| ④③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   |                   |
| ④④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④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               |
| ④⑥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⑩)을 적습니다. |   |                   |
| ④⑦ 전자신고세액공제   |   |                   |
| ④⑧ 결정세액: ③③-③④-③⑤-③⑥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

# 2쪽

| 구 분                                |  | 금 액        |
|------------------------------------|--|------------|
| ④⑨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⑤⑤~⑤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6쪽 중 제2쪽) |

## → 가산세 설명 생략

|                             |  |  |
|-----------------------------|--|--|
| ⑤⑨ 총결정세액: ④⑧+④⑨             |  |  |
| ⑥① 기납부 세액                   | 중간예납세액   |  |
|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⑧⑩) 합계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⑧⑨) 합계를 적습니다. |  |
| ⑥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⑤⑨-⑥① |  |  |
| ⑥③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  |
| ⑥④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⑥①-⑥②    |  |  |

## 계산 예시

-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 제외) : 3,600만 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000만 원

- 사업소득 업종코드 : 940909 단순경비율(일반율) 64.1

※ 비교

기준경비율(일반율) 13.4

- 본인 1인, 연금계좌 120만원,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대상 없음

## 풀이

- 근로소득금액 : 25,350,000원 (근로소득공제 10,650,000원)
- 사업소득금액 : 3,590,000원 (필요경비 6,410,000원) 단순경비율(일반율) 64.1
- 소득공제 : 인적공제                    1,500,000원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18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716,000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 기납부세액 : 650,000원 (사업 300,000 + 근로 350,000)

## 2쪽

| ⑦ 인<br>원<br>명<br>단<br>위<br>번호 | ⑤ 사업소득명세      |                        |                                  |             |              |                 |         |                     |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                                   |
|-------------------------------|---------------|------------------------|----------------------------------|-------------|--------------|-----------------|---------|---------------------|-------------------------|-------------------------------|-----------------------------------|
|                               | 사업장           |                        | ⑦④ 소득<br>구분코드<br>(5쪽 작성<br>방법참고) | ⑦⑤ 업종<br>코드 | ⑦⑥ 총수입<br>금액 | ⑦⑦ 단순<br>경비율(%) |         | ⑦⑧ 필요경비<br>(=⑦⑥×⑦⑦) | ⑦⑨ 소득<br>금액<br>(=⑦⑥-⑦⑧) | ⑧⑩ 원천징수도<br>는<br>납세조합<br>징수세액 | ⑧⑪ 원천징수의무<br>또는<br>납세조합<br>사업등록번호 |
|                               | ⑦② 상호<br>(성명) | ⑦③ 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 |                                  |             |              | 일반<br>율         | 자가<br>율 |                     |                         |                               |                                   |
| 1                             | 김이박           | 000-00-00001           | 40                               | 940909      | 10,000,000   | 64.1            | 49.7    | 6,410,000           | 3,590,000               | 300,000                       | 123-45-67890                      |

(6쪽 중 제3쪽)

## 3쪽

|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             |                         |                        |                             |                                |                    |         | 원천징수세액        |  |
|----------------------------------|-------------|-------------------------|------------------------|-----------------------------|--------------------------------|--------------------|---------|---------------|--|
| ⑧② 소득<br>구분코드<br>(6쪽 작성<br>방법참고) | ⑧③ 일련<br>번호 | 소득의 지급자<br>(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 ⑧⑥ 총수입금액<br>(총급여액·<br>총연금액) | ⑧⑦ 필요경비<br>(근로소득공제·<br>연금소득공제) | ⑧⑧ 소득금액<br>(⑧⑥-⑧⑦) | ⑧⑨ 소득세  | ⑧⑩ 농어촌<br>특별세 |  |
|                                  |             | ⑧④ 상호(성명)               | ⑧⑤ 사업자등록번호<br>(주민등록번호) |                             |                                |                    |         |               |  |
| 51                               | 1           | 타파하(주)                  | 987-65-43210           | 36,000,000                  | 10,650,000                     | 25,350,000         | 350,000 |               |  |

## 1쪽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           |        |      |    |            |           |
|--|-----|------------|-----------|--------|------|----|------------|-----------|
| 구분   |     |            |           |        |      |    | 금액         |           |
| ⑬ 종합소득금액: ⑤ 사업소득명세(⑦⑨)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⑧⑧)의 소득<br>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            |           |        |      |    | 28,940,000 |           |
| ⑭ 소득공제: ⑮~㉑합계-⑳  |     |            |           |        |      |    |            |           |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            |           | 인적공제   |      |    |            |           |
| 관계<br>코드   | 성명  | 내외국인<br>코드 | 장애인<br>코드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인원 | 금액         |           |
| 1  | 김이박 | 1          |           | ~~     | 기보 ⑮ | 본인 | 1          | 1,500,000 |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3쪽

-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                     |         |
|---------------------|---------|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 716,000 |
| ⑪ 합 계: ⑩~⑪ 세액공제액 합계 | 716,000 |

# 1쪽

|  |            |
|--|------------|
| ①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27,440,000 |
| ② 세율: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15%        |
| ③ 산출세액: ①×② -누진공제액(제5쪽 작성방법 참고)  | 2,856,000  |
| 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용합니다.   |            |
| 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⑨)을 적용합니다.  |            |
| ⑥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⑳~㉔)의 합계금액을 적용합니다.  | 1,026,000  |
| ⑩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 180,000    |
| ⑫ 표준세액공제<br>-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br>-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 130,000    |
| ⑭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⑩)을 적용합니다.  | 716,000    |
|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            |
| ⑯ 결정세액: ③-④-⑤-⑥("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1,830,000  |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2쪽

|                             |  |         |
|-----------------------------|--|---------|
| ⑤⑨ 총결정세액: ④⑧+④⑨             | 1,830,000  |         |
| ⑥⑩<br>기납부<br>세액             | 중간예납세액<br>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⑩) 합계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⑩) 합계를 적습니다. | 650,000 |
| ⑥①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⑤⑨-⑥⑩ | 1,180,000  |         |
| ⑥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         |
| ⑥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⑥①-⑥②    | 1,180,000  |         |

## 3쪽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신고인 김이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만약,  에서 작성한다면?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3. 기장의무와 필요경비

---

- 사업소득 관련 용어 B
  - 기장의무(성실, 외부/자기, 복식/간편, 기준/단순)
  - 경비율 조회 및 예시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부동산임대업자의 기장 고민
  - 기장 vs 추계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 사업소득 관련 용어

### ◎ 기장의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 외부조정 대상 vs 자기조정 대상
- 복식부기 의무 vs 간편장부 대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vs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 관련 용어\_경비율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관리

-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업종코드는 숫자 한자리 이상 입력하여 조회
-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비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율 적용

\* 귀속연도

2025

\* 업종코드

검색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무슨 상관?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사업소득 관련 용어\_경비율 예시

|            |           |
|------------|-----------|
| 기준경비율코드    | 552303    |
| 중분류명       | 음식점 및 주점업 |
| 세분류명       | 비알코올 음료점업 |
| 세세분류명      | 커피 전문점    |
| 업태명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1      |
| 기준경비율(자가율) | 15.5      |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5      |
| 단순경비율(자가율) | 87.2      |

※ '일반율', '자가율'은 무엇?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성실, 외부조정,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 업종           |  | 성실신고<br>확인  | 외부<br>조정    | 복식부기<br>의무자 | 기준경비율 (둘 중 하나 충족) |             |
|--------------|--|-------------|-------------|-------------|-------------------|-------------|
| 수입금액 판단 과세기간 |  | 해당연도        | 직전연도        | 직전연도        | 직전연도              | 해당연도        |
| 가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br>부동산매매업<br>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15억원<br>이상  | 6억원<br>이상   | 3억원<br>이상   | 6천만원<br>이상        | 3억원<br>이상   |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공기조절공급업,<br>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br>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br>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br>이상 | 3억원<br>이상   | 1.5억원<br>이상 | 36백만원<br>이상       | 1.5억원<br>이상 |
|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br>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br>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br>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br>이상   | 1.5억원<br>이상 | 75백만원<br>이상 | 24백만원<br>이상       | 75백만원<br>이상 |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제외 → 무조건 복식부기)  
다만, 작년에 폐업을 했어도 사업 이력이 있으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 2026년 5월(또는 6월)에 신고하는 대상 과세기간은?
- ‘성실’에서 따지는 해당 연도는 언제?
- 그렇다면 직전 연도는 언제?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5-53-6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경비율 적용)

| 구분       | 추계소득금액 계산  |
|----------|--|
| 기준경비율    | <p>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p> <p>① 수입금액 - <u>주요경비</u>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br/> <span style="color: red;">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span></p> <p>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p>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 인적용역사업자(코드번호 94XXXX)의 경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 초과금액은 초과율 적용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부동산 임대업자의 기장 고민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임대업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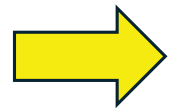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북 1권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기장 vs 추계 (예시)

### ● 임대업씨의 임대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차이를 비교해보자.

- 월세수입 5백만원
- 임대보증금 5억원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18,500,000원
- 인건비 등 필요경비 합계액 3천만원 (주요경비 1천5백만원)
- 가족상황 : 처, 자녀(미성년자 2명) (가정) ※ 소득공제 : 6백만 원
- 기준경비율 17.6%(가정) ※ **단순경비율 41.5% 아님에 유의**
- 건물 취득가액 2억 원



(질문1) 월세 말고 관리비수입도 세금을 내요?

(질문2) 예금이자도 임대수입에 포함하나요?

# 기장 vs 추계 (예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

## 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 수입 = 5백만원 x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 수입 = 1백만원 x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x 정기에금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5억원 - 2억원) x 1.2% - 18,500,000원 = 0원
-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72,000,000원
- ▷ 소득금액 = 72,000,000원 - 30,000,000원 (필요경비 합계액)  
 = 42,000,000원
- ▷ 과세표준 = 42,000,000원 - 6,000,000원(소득공제, 가정치)  
 = 36,000,000원
- ▷ 소득세액 = 36,000,000원 x 15% - 1,260,000원(누진공제)  
 = 4,140,000원

## ②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 수입 = 5백만원 x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 수입 = 1백만원 x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정기에금이자율  
 = 5억원 X 3.1% = 15,500,000원
-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15,500,000원  
 = 87,500,000원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87,500,000원 - 15,000,000원 - (87,500,000원 x 17.6%) = 57,100,000원
- ▷ 과세표준 = 57,100,000원 - 6,000,000원(소득공제, 가정치)  
 = 51,100,000원
- ▷ 소득세액 = (51,100,000원 x 24% - 5,760,000) x 1.2%  
 = 7,804,800원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세무사 이호성

## #. 추가자료

---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 필요경비 (기초)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례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함**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br>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0.2%<br>② 미사용금액×0.2% |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필요경비 (기초)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상여는?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용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이 해당 사업에 종사?
- 사업과 가사(家事)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례

- 게임소설작가, 집(자택)에서 집필활동하여 수익창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일까?

[판결내용] ① 원고가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자택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도우미로 인하여 원고가 소설을 집필할 시간이 더욱 확보되어 원고의 소설 집필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가사도우미가 수행한 업무가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례 (계속)

- 게임소설작가, 집(자택)에서 집필활동하여 수익창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일까?

[판결내용] ③ 원고의 자택 중 원고가 소설 집필에 사용하는 공간은 일부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원고 개인이 사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가사도우미의 업무는 원고의 소설 집필 공간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거공간 전체에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도우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63812 판결의 제1심 중 발췌

#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7일(월) 오후 2시”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기본)과정  
납세자 세법교실 강의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외부 강사의 강의 내용 및 견해는 강사 개인의 학술적 의견일 뿐이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나 해석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선 실무 적용 시 반드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기초)

National Tax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발행** 2026년 4월

**발행처**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19(서호동 1513)

전화 : (064) 731 - 3200(대)

FAX : (064) 731 - 3316

본 책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집필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복사 및 전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립니다.